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46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등 결제 시 감면(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이내 할인(감면) 규정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할인(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기한 규정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제10조제5항관련)”에 감면 내용 추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 감면	조례안 제2조
2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제9조(수강료의 감면)에 항목 추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강료의 100분의 10감면	조례안 제3조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 제3항)”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시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5% 할인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10% 할인 추가	조례안 제4조
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8조제5항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이용료의 100분의 10감액	조례안 제5조
5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강료의 100분의 10감액	조례안 제6조
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수료 및 진료비의 10% 감면	조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전통시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02-3396-5045, FAX:02-3396-8680, 메일:jj66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할인)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④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단위	대상	상한금액
사용료	1시간	다목적회의실, 사랑방 등	10,000원
수강료	월	프로그램 이용자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일반강좌)	30,000원

-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 및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등록된 장애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1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별표 2]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회사용료 (1시간기준)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공연장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				
강의실 프로그램실	-	인근 유사 시설 준용	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비고	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고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음악·예술·체육 정보·과학 등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유아반	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취미·교양·문화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초·중·고생,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상 담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				
청소년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